

1. 안 건 명

가.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출일자 및 제출자

가. 제출일자 : 2013년 4월 23일

나. 제 출 자 : 마포구청장

3. 의안 회부일자

가. 2013년 4월 27일

나. 의안번호 : 13-25

4. 관련근거

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검토보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 일부개정 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개정(2011.10.17)에 따라 「지방공기업법」 제 76조에 따라 구가 설립한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및 구 조례로 설립하고 출연한 마포문화재단에 대해서도 행정정보 공개 조례를 확대 시행하고자 제출된 것임.

< 주요내용 >

- (1) 안 제2조에서는 집행기관을 정의하였으며, 적용범위를 서울특별시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및 마포문화재단으로 확대함.
- (2) 안 제6조부터 안 제9조까지, 안 제13조, 안 제16조에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범위에서 용어를 정비함.

[검토의견]

동 일부개정 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2011년 10월 17일에 일부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에 따라 집행기관을 정의하였으며, 적용범위를 서울특별시 마포구 및 소속행정기관은 물론 서울특별시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및 마포문화재단으로 확대하여 예산 편성과 집행내역에서 업무추진비까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구에만 한정되었던 정보공개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담당자 교육을 통한 정보공개 마인드 함양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행정정보공개 제도를 운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범위에서 용어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